

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3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상위법령인 「치매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광역치매센터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
- 나.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의 취소 시 수탁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·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보며,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(안 제8조)
- 나.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(안 제9조)
- 다. 그 밖의 자구 수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치매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창의규제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규제개선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5. 6. 5. ~ 6. 25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: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선영 (☎ 2133-7589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치매관리법」 제3조”를 “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2”로, “치매센터”를 “광역치매센터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치매센터”를 “광역치매센터”로 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치매센터 위탁기관”을 “광역치매센터 위탁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치매센터”를 “광역치매센터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재산(이하 “수탁재산”이라 한다)”을 “재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수탁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주 2일(16시간)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받아 운영 중인 광역치매센터의 장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치매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2----- ----- ----- 광역치매센터----- ----- -----.
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(생략) ② 치매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.	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광역치매센터----- ----- -----.
제5조(수탁기관 선정) ① ~ ③ (생략) ④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위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다.	제5조(수탁기관 선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광역치매센터 수탁기관 ----- ----- -----.
제6조(수탁기관의 의무)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	제6조(수탁기관의 의무) ----- ----- 광역치매센터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위탁의 취소) ① (생략)	제8조(위탁의 취소) ① (현행과 같

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사업비, 각종 시설, 자료, 장비 및 비품 등 위탁 받은 재산(이하 “수탁재산”이라 한다)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. 다만,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비 지원 등) ① (생략)

②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.

음)

② -----

--- 재산 -----
-----.

<삭 제>

제9조(운영비 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수탁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주 2일(16시간)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광역치매센터의 장의 근무방식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.

4. 작성자

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선영 (☎ 2133-7589)